파주시 탄현면 공고 제2026-80호

탄현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
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탄현면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모집기간 : **2026년 11월 2일(월) ~ 2026년 11월 25일(수) (※18시까지 시간 엄수)**

2. 접수장소 :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**방문접수** (평일 9시~18시까지 제출) *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
또는 **이메일 접수(kim1013@korea.kr/스캔본 제출(자필서명 필수))**

3. 모집인원 : 총 50명

■ **(모집분야)** 개인 공개모집(60%이상) 30명 / 탄현면 소재 기관·단체 추천모집(40%이하) 20명
※ 추천모집 분야 內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무추첨 연임 인원 포함

4. 자격요건

■ **공고일 현재**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, **주민자치교육 6시간*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.** (다만,「공직선거법」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음.)

[*경기도평생학습포털(https://www.gseek.kr/)에서 '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' 이수시, 사전교육 6시간 수료 인정]

- **(공개모집) 탄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**
- **(공개모집)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탄현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**

※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2에 따라, 탄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탄현면 사업 종사자 및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직원 등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
- **(단체추천) 탄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탄현면 소재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* 등에 속한 사람**

*** 기관·단체의 인정범위**

구 분	범 위
기 관	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
단 체	· 직능단체 : 각 읍면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관, 회원명부, 회의록 등을 근거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· 공공단체 :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수행하는 법인단체

※ 그 밖의 단체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모집완료 후 추첨운영위원회 심의 예정

5. 위원의 임기 : 위촉일부터 2028. 12. 31.까지

6.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주민등록 초본, 주민자치 기본교육 수료증, 추천서(단체추천),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(아래 표 참조)

※ 신청 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 '고시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접수 장소 비치

구 분	자격에 따른 증빙서류
공 통	1.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▶ **주민등록초본(공고일 기준 주소 확인용)**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·면·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▶ **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** 3. **주민자치 교육 수료증**
단체추천 모집분야	해당 지역 소재 학교, 기관, 단체*에 속하며, 탄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▶ **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활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 ※ '단체'의 경우 직능단체/공공단체 확인 서류 필요 **ex) 정관, 회의록, 단체회원명부, 6개월 이상 활동 실적 증빙서류**

7. 선정방법 : 신청자격(개인 및 단체분야) 요건 적정 여부에 대해 추첨 운영위원회 심의 후 **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수료자** 중 공개 추첨

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▸ 위원신청(접수) ▸ [추첨운영위원회] 자격요건 심사 ▸ 공개추첨 ▸ 위원 선정

※ 공개추첨일 : 2026년 12월(예정) / 추첨일 별도 공지(누구나 참관 가능)

8. 주민자치 교육안내

■ **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(6시간)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, 위원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.(미 이수 시 선정불가)**

※ 경기도평생학습포털(https://www.gseek.kr/)에서 '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' 이수 시, 6시간 수료 인정

9.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

■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

■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의 의무 수행

10. 결과발표 : 공개추첨 후 개별통지,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
11. 기타사항

■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의거 개인별, 단체별 특정성별이 60% 이하가 되도록 추첨합니다.

※ 모집별 정원 미달 시도 특정 性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.

■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
- **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**
-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**해당했던 자**가 주민등록을 **이전**하거나 사업장 등을 **그만두는** 등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규정한 **지원 자격**에 해당 안 될 시 선정 제외

12. 문의사항 :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(☎ 031-940-8084)

2026년 11월 2일

탄현면 주민자치회 추첨운영위원회